

중재 판정 사례 ⑥

자료제공 / 대한상사중재원

1.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V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에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품 목	주택개발사업 설계용역	
신청금액	1,553,936,000원	중재비용: 13,226,648원
신청일	2003. 7. 7.	
판정일	2005. 3. 16.	
처리기간	632일	
판정금액	357,000,000원	

① 사건개요

A와 B는 주택개발사업지구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이어 용역비(대개)를 금 3,884,840,000원(당초 금 4,034,000,000원으로 정했

다 감액조정 됨)으로 정해 준공시까지 기성고비율에 따라 8차에 걸쳐 분할지급기로 약정한 후 2001. 9. 28까지 B는 A에게 위 대금 중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금 1,553,936,000원을 지급하였다.

A는 B가 위 계약진행과정에서 전후 8차에 걸쳐 빈번한 설계변경, 구역지정변경, 사업시행변경 등을 지시, A에게 새로운 용역 즉, 추가(변경) 설계용역을 부담시켜 변경설계 도서 재작성 등으로 인한 용역비계약금액 증액조정사유 내지 추가설계 용역비 정산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A의 주장 중 해당 추가설계비로 인정할 금액은 11,859,347원 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미 기성대금으로 지급완료한 기본설계비의 기본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기본설계의 수정, 보완 사항에 속하므로 당초의 기본설계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 뿐 결코 새로운 과업(용역)에 해당치 아니한다 하여 위 설계비용의 추가청구는 부당하

다며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01. 3. 사업시행인 가도서를 작성, 완료하고 그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도서 등을 첨부, 2001. 4. 27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고 2001. 9.18 고나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박고 같은 날 B로부터 기성고(40%)에 해당하는 기본설계용역비 등으로 위 1,553,93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B가 A에 대해 위 사업시행 인가신청일 이후인 같은 해 5. 8부터 9. 21까지 사이에 7회, 사업시행인가 후인 같은 해 10. 10 1회 등 전후 8차에 걸쳐 설계변경 작업지시를 했고, 2001. 10. 30 구역지정변경,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변경지시를 함에 따라 A는 위 사업 시행인 가도서작성을 완료한 2001. 3. 이후 약 15개월에 걸쳐 방대한 분량의 해당 설계변경 등의 변경도어를 추가로 재작성하고 이를 첨부해 2003. 6. 24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고 2003. 9. 8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관계 과업내용서Ⅱ 용역비정산에 관한 조항 등에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쌍방이 협의하여 정산처리키로 하며 계약금액은 기본설계완료 기성대가지급시 최초사업인가 연면적에 기준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견적 및 성과품 제출완료 이후 최초 변경사업시행인가 완료 연면적이 기인가시대비 5%이상 증감시는 기인가시 연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연면적에 대해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연면적증감 5% 이내의 경우는 서비스차원에서 용역비증감 없이 보완처리키로 한 사실을 인정 했다.

또한 A에게 새로운 추가변경설계용역을 부담시켜 수행케 한 이상 이는 곧 위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으로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추가로 부담시킨 새로운 용

역의 대가를 조정·정산해야 함에도 이 사건 계약당사자간에 아직까지 그 정산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추가된 새로운 용역의 대가에 관해 계산해 볼 때 감정결과에 나타난 금 1,070,195,000원이 그 최고한도로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정 했다.

마지막으로 감정금액 내에서 새로운 용역의 대가를 조정, 결정키로 하되 비록 A가 B의 작업지시 내지 사후 주문변경 등에 따라 새로운 추가설계용역으로써 설계도면의 변경, 재작성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업수행상 기왕의 설계도면의 존재로 인해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투하기술인력의 절감, 작업기간의 단축, 작업진행의 용이 등 상당한 기여도가 있는 외에도 위에서 본 연면적 증감 5% 이내의 경우, 용역비 증감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 보완처리키로 한 점, 전기설계부분에서 일부 기왕의 기본설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추가설계도면이 있는 점, 추가설계도면 중에 기본설계도면이 아닌 일부실시설계도면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 추가설계용역비로 인용할 금액을 35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정했다.

2.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VI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품 목	골프연습장 공사	
신청금액	45,624,154원	중재비용: 1,507,798원
신청일	2003. 8. 12.	
판정일	2003. 12. 24.	
처리기간	134일	
판정금액	15,000,000원	

① 사건개요

A는 B와 2003. 4. 8 골프연습장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기간 내 선행공정(건축주 직영공사인 파일공사, 데크공사) 등의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실비 정산을 요청했다.

A는 B가 요청에 응하지 않고 2003. 7. 12. 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자 A와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A의 과실로 공사대금 산정이 소액으로 체결돼 공사 계약금액으로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는 A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며, 공사금액은 기성금액보다 과다지급 됐고, A에 대여해 준 금액까지 기성공사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A가 산정한 공사금액을 그 객관성이 없

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증액은 인정하나, 계약내용부분에서 공사금증액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투입공사비에 대해 공사계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는 실소요경비가 아닌 목적물의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금액으로 판단해 실공사비가 810,624,544원이 투입됐으나 금 780,000,000원만 인정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의 공사계약해지는 A와 B의 묵시적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A에 대여해 준 금액은 지급형식이 차용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비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A kiss – 키스

He: “Do you believe kissing is unhealthy?”

She: “I couldn’t say. I’ve never been...?”

He: “Never been kissed?”

She: “Never been sick.”

남자: “키스를 비위생적이라 생각해요?”

여자: “모르겠어요. 아직…….”

남자: “키스해 본 적이 없다는 건가요?”

여자: “탈났던 적이 없었거든요.”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